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84
----------	-------

발의연월일 : 2025. 6. 25.

발 의 자 : 강경숙·김재원·백선희
황운하·신장식·박은정
차규근·김문수·김준형
서왕진·송재봉 의원
(1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교육책임 실현을 위해 교육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민적 합의 속에서 정립하자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디지털교과서에 세금을 투입하고 일선 학교에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 자료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실현하여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서와 지도서로 하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저작물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1조의2 신설).
- 나.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학습 편의를 위하여 디지털 형식의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되, 학습자 개인의 정보보호 및 학교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 다. 학교는 디지털 교육 자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의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 자료의 사용에 관여하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용 도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저작물은 제외한다.

가.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

나.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

2. “교육 자료”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다.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제29조의 제목 중 “사용”을 “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을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교과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범위·저작”을 “저작”으로, “사정(査定)”을 “사정(査定), 디지털 자료의 개발·배포 및 운영”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학습 편의를 위하여 디지털 형식의 교육 자료(이하 “디지털 교육 자료”라 한다)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자 개인의 정보보호 및 학교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디지털 교육 자료를 제32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의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 자료의 사용에 관여하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중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자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재 및 자료”를 “교육 자료”로 한다.

②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용 자료”를 각각 “교육 자료”로 한다.

③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를 “교과용 도서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u>1. “교과용 도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저작물은 제외한다.</u> <u>가.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u> <u>나.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u> <u>2. “교육 자료”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
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가. 「저작권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저작물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
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다.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교과용-----
---.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학습
편의를 위하여 디지털 형식의
교육 자료(이하 “디지털 교육
자료”라 한다)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자 개인의
정보보호 및 학교 현장의 수용
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디지털 교육 자료를
제32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의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② 교과용 도서의 <u>범위·저작·</u> <u>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u> <u>및 가격 사정(査定)</u>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u>디지털 교육 자료의 사용에 관</u> <u>여하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u> <u>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④ -----<u>저작</u>----- ----- ---<u>사정(査定), 디지털 자료의</u> <u>개발·배포 및 운영</u>----- -----.
--	--